2020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우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입학팀
입학안내 : 031-770-7701~2
팩 스 : 031-772-5479
입학안내 홈페이지 : http://admission.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020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 입학안내 : http://admission.acts.ac.kr

0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3
02. 지원자격별 안내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 영주교포의 자녀 · 해외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자영업자의 자녀 · 선교사의 자녀 · 외국국적취득 외국인	·	4~6
2. 입학정원 비제한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7~8
03. 제출서류		·	9
04.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	11
05. 전형방법 및 일정		·	11
06. 원서접수방법		·	12
07. 지원자 유의사항		·	13
08.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	14
09.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15
10. 전형료		·	15
11. 전교육과정이수자 자격 기준		·	16
12. 입학원서 작성 방법		·	17
1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1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체계도

ACTS Educational System



학 과 별 교 육 목 표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Departments

신학과 (Department of Theology)

신학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기초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가르치고, 신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며 이 복음을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 나아가서 세계 전역에 전하는 사명감을 가진 복음사역자를 양성합니다.
특히 신학과는 '신본주의', ' 복음주의' 그리고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설립목적에 근거해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선교지향적인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되, 특별히 국내·외에서 활동하게 될 목회자와 교회지도자와 학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풍부한 교양지식을 함양하고, 성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학습하며, 신학의 각 전공분야를 장차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선교문화복지학과 (Department of Intercultural Studies & Social Welfare)

선교문화복지학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신본주의적 원칙에 의해 살며, 이 복음을 아세아 및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타문화선교사와 문화사역자와 선교적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선교문화복지학과는 타문화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분을 위해서 '신학'과 '선교학'과 '지역언어'의 소양을 두루 갖추게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관련해서는 우리대학교의 신학과정을 복수전공 내지 부전공함으로써 기초를 배양케 합니다. 선교학에 관련해서는 타문화사역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문화사역에 관련해서는 찬양, 스포츠, 미디어 등을 활용한 사역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학에 관련해서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기독교교육상담학과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 Counseling)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 및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과 상담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리더를 길러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 교육이념(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및 교육목적(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 위에서 국내외의 가정, 교회, 학교와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기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돌봄과 기독교교육 및 기독교상담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상담학과를 졸업하면 청소년 상담사, 상담심리지도사, 기독교 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독교학교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회원교로서 국제기독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선교영어학과 (Department of English and Global Studies)

선교영어학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기독교적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이 복음을 아세아 및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진 선교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 할 수 있는 선교전문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선교영어학과는 전공인 영어 교과목들을 문법, 회화, 독해, 실용, 선교 등의 영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교제, 영어예배 등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대학교에서 개설한 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상담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교내·외의 다양한 선교행사와 선교여행을 가능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교중국어학과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선교중국어학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고, 통·번역 할 수 있는 중국어실력을 갖추며,중국의 역사·문화 및 현대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21세기 중국전문가로 복음사역을 포함한 다양한 대(對)중국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졸업 시에는 중국의 여러 대학원 또는 국내 및 우리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對)중국분야 중국전문가로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1. 모집인원 및 지원 자격

1. 모집인원

구분	모집구분	모집학과	모집인원	비고
입학정원 2%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신 학 과	3	*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모집단위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 교 영 어 학 과		
		선 교 중 국 어 학 과		
입학정원 비제한	· 12년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신 학 과	**모집인원 제한없음**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 교 영 어 학 과		
		선 교 중 국 어 학 과		

2. 지원자격

- 모든 지원분야는 공통적으로 신학과는 기독교 세례교인,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는 기독교 출석교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1-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1.5년	-	2년	1.5년	2년	1.5년	
해외근무자(공무원,상사직원,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자영업자의 자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자영업(현지법인 근무 포함)을 하는 중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선교사의 자녀	부 또는 모와 학생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선교사, 선교목적 체류자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1년	2년	2년	1.5년	-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해외 거주·체류 기간을 산정

⑴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3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4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3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⑵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⑶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⑷ **해외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1-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4학기) 이상 이수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2년	2년	1.5년	-	-	-	-	-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⑴ **재학기간의 기준**

㈎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⑵ **보호자 등의 조건**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은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2021학년도 변경 예고 -

2021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아래와 같이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고교 1년 포함)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이상, 부모의 경우 2/3이상으로 설정

2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2-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12년	12년	11년	-	-	-	-	-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12년	12년	12년	-	-	-	-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⑴ **전교육과정**

(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함.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⑵ **보호자 등의 조건**

(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구 분	지원 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복수국적자 제외)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⑴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복수국적자 제외)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가)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나)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⑵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가)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2-3. 북한이탈주민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⑴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

(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나)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라)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마)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바)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3 지원자격 세부 안내

1. 외국학교 인정기준

⑴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재학연한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

(3) 국내 · 외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해당학교과정 이수자로 미인정

3.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기준

(1) 고등학교 2년(4학기)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기간

(2) 중학교와 고등학교과정(1년 이상)에 걸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기간

(3) 위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4. 입학허용기간 : 제한없음

5.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3.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 서류
영주교포 자녀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말소등본(또는 호(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⑨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각 1부) ⑩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보호자, 학생)
해외근무의 자녀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국제기구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또는 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각 1부) ⑩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⑪ 해외지사설치인증서(상사직원의 자녀) ⑫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자영업자의 자녀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또는 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각 1부) ⑩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⑪ 자영업허가서 ⑫ 세금납부 사실증명 관련 서류(학생재학기간 중 최소 2년치)
선교사 · 선교목적체류자의 자녀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또는 제적 등본) ⑦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⑨ 재외국민 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각 1부) ⑩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⑪ 선교단체장 발행의 선교파송증명서(파송기간 명시)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학생 본인만 외국인)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학업계획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⑤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⑧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⑩ 외국국적증명서(학생: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⑪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⑫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⑤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⑧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귀화허가통지서(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⑨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학업계획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⑤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⑧ 전가족 호적등본(해당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 ⑨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⑩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⑪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⑫ 재정능력입증서류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학력사항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④ 학업계획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⑤ 고등학교 재학 · 성적 ·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⑥ 초 · 중학교 재학 ·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⑨ 전가족 호적등본(해당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 ⑩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⑪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⑫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2급 이상) ⑬ 재정능력입증서류
북한이탈주민	① 입학원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② 출석교회담임목사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④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중국내 학력취득자 입증 서류 :** 고등학교 졸업장(졸업증명서) 및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센터 발행 학력 인증보고서

■ 중국교육부 학력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아래 지정한 사이트 이외의 학력 인증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1. 학력인증기관 :
   - 교육부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 www.cdgdc.edu.cn
   - 문의 : 이메일주소 : cqv@cdgdc.edu.cn / 전화번호 : +86-10-8237-9480
2. 한국에서 인증보고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 : http://www.cis.or.kr/main.htm/ → 중국학력인증센터
   - 문의 : 이메일주소 : cis88@cis.or.kr / 전화번호 : 02-554-2688

※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미화 $20,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② 재정보증인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호적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증명서
(중국인의 경우 가족사항이 기재된 호구부, 거민신분증)

※ 국가별 가족관계증빙서류 (예)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04.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서류 제출 안내

지원자는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비체약국)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나.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함

다.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3.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나. 사문서* (사립대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05.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구분	전형 방법	비고
전체 전형	**면접 100%**	

※ 성적반영항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모집정원 내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고사에 불응시하거나 불합격 처리 시,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2019년 12월 02일(월) ~ 12월 31일(화)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류접수	2019년 12월 26일(목) ~ 12월 31일(화) 10:00 ~ 15:00	우리대학교 입학팀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 ~ 12월 31일(화) 10:00 ~ 15:00**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화)는 17시까지 원서접수**	우리대학교 입학팀
첨부서류 제출	- 담임목사추천서 및 기타서류(모집요강 참조) - 제출기간 : 2019년 12월 26일(목) ~ 2020년 1월 7일(화)	우리대학교 입학팀
전형일 (면접고사)	**2020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우리대학교
합격자 발표	2020년 1월 23일(목) 오전 11시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록일자	2020년 02월 05일(수) ~ 02월 07일(금)(3일) 16:00까지	합격자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및 지정 등록장소

06. 원서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서류접수 : **<제출서류 목록>**의 해당사항 참고
※ 외국공문서(증명서)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원서접수 : 입학원서, 담임(지도)목사추천서, 학력사항기록표, 기타 제출서류

접수처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본관 행정사무실 101호 입학팀 전화 : (031) 770-7701~7702 팩스 : (031) 772-5479

3. 우편접수는 제출서류 일체(수험표 및 부본 포함)를 우편발송 후 원서접수 기간 중 입시사무실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우편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수험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편발송 후 확인을 하지 않고 수험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7. 지원자 유의사항

[필수확인사항]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 모집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일자 확인〉

○ 대입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우편에 의한 접수를 포함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17:00까지 우리대학교에 원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지원자는 서류접수 여부를 우리대학교 입학팀(031-770-7701~2)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지원자는 지원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3.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해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www.0404.go.kr 참고) 단,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사본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접수된 지원서는 지원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6. 최종 합격자라도 이미 제출한 서류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 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합니다. 이 경우 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8. 면접고사일에는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 시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부착)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9. 면접고사일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10.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

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을 하였더라도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모든 외국국적 신입생은 재학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4.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08. 한국어능력 관련 안내

1.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외국인,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 전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 한국어능력
   - 입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자 (단,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 졸업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미취득시 졸업자격 미달 처리함

09.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1. 등록포기

(1)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합격 취소(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등록금 반환 신청서)는 해당 전형시기에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우리대학교 입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령 83호)

10.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과 외국인	80,000원
북한이탈주민	52,000원

※ 우편접수시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2019년 9월 20일(금)(우체국 소인까지 유효)까지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서와 해당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

액을 반환합니다. (자격인정 및 제출서류는 수시모집요강 기회균형선발전형 안내 참조)

2. 전형료 반환 안내

1. 법 제34조의4제 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2. 우리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전형료 반환은 2020년 4월 30일 이전 우리대학교가 공지한 반환기간에만 반환합니다.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① 우리대학교 방문
   ②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이체 수수료 차감 후 반환)
4. 반환절차에 소용되는 비용(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전형료 반환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반환대상자의 책임이므로,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기준

1.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내 학교 재학 및 국내 체류 관련

(1)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2)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기준

(1)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table>
<tr><th>학년제</th><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th>비 고</th></tr>
<tr><td>10학년이하</td><td>미인정</td><td rowspan="2">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td></tr>
<tr><td>11학년제</td><td rowspan="2">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r>
<tr><td>12학년제</td><td></td></tr>
<tr><td>13학년이상</td><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
</table>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3. 기타

○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기타의 경우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우리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2. 입학원서 작성방법

1.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제외)로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2. 입학원서, 입학원서 부본, 수험표 및 접수증의 기재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3. '*'표시가 된 란은 우리대학교에서 기재하는 란이므로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원구분은 신입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지원자격은 "① 외국영주교포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 선교사 자녀 …"등 중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 성명(한글, 한자, 영어), 국적,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연락처는 입시기간 중 수험생에게 긴급히 연락이 가능한 수험생 본인이나 보호자(부모)의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초 · 중 · 고 · 대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국내해당 과정과 정규여부(학력인정교)는 출신학교에 확인 후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 가족사항 란의 보호자는 영주(근무)기간 내에서 영주(근무)국에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영주(근무)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기입합니다. 제3국 수학 시에는 해당 수학 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같은 란에 별도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아. 출입국 사실란은 출입국가, 일자, 기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서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 며, 지원요건에 맞는 기간만 기재 합니다.
   자.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전형료 반환 은행계좌를 기재합니다.
   차.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5. 학력사항기록표 서식을 원어 및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모집단위(지망학과),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신급, 출석교회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2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합격자의 경우, 학적자료로의 이관에 따라 일부 자료가 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한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안내〉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이름,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수험번호,대학코드,합격/예치금구분,접수장소,접수일자,지원결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계열코드,출신고교코드,출신고교유형코드,졸업연도,등록일자구분,제3자 정보제공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주의 : 당해 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선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출신고교의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자 조회 서비스 제공	이름, 성별, 대학구분, 등록대학,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